

2022년 소득기준표 및 영양위험요인 세부사항

1. 대상자격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2.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

○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빈혈 판정기준 : WHO 기준)
 - 6~59개월 영유아: 11g/dl 미만 - 5세 유아: 11.5g/dl 미만
 - 임신부: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12g/dl 미만
- ※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혈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모체의 위험요인을 적용할 수 있음

○ 신체계측

■ 영유아

저체중이나 성장부진

- ※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 연령별 신장,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표준체중에 대한 비율이 80% 미만

- 임신·출산·수유부: 저체중(BMI 18.5미만)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 영양소 섭취상태에 의한 영양위험판정은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RIs, 2020)에 근거하여 판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다태아(쌍생아 이상)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 등